

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클래스 신설	운용역 변경	투자 대상 자산	모펀드 투자 대상자산	환매 수수료	세제 혜택 연장	결산	변동성	변경 사항
1	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○	-	-	-	-	-	-	-	12)
2	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	-	○	○	-	-	-	-	-	12)
3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	-	-	○	-	-	-	-	-	12)
4	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투자회사(채권혼합)	-	-	○	-	-	-	-	-	12)
5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	-	-	○	-	-	-	-	-	12)
6	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-	○	-	-	-	-	-	12)
7	미래에셋엠브렐러증권투자신탁(채권)	-	-	○	-	○	-	-	-	10), 11), 12)
8	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-	-	-	-	-	12)
9	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	-	-	○	-	-	-	-	-	12)
10	미래에셋퇴직플랜BRICs업종대표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○	-	-	-	-	12)
11	미래에셋퇴직플랜동유럽업종대표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○	-	-	-	-	12)
12	미래에셋퇴직플랜친디아업종대표4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○	-	-	-	-	12)
13	미래에셋G2이노베이터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-	-	-	○	12)
14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○	○	12)
15	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-	-	-	-	○	○	12)
16	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○	○	12)
17	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-	-	○	○	12)
18	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40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-	-	-	-	-	-	○	○	12)
19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-	-	○	○	9), 12)
20	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(주식)	-	-	-	-	○	-	○	○	9), 10), 11), 12)
21	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-	-	-	-	-	-	○	○	12)
22	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3호(주식)	-	-	-	-	-	-	○	○	12)

23	미래에셋맵스미국부동산투자신탁11호	-	-	-	-	-	○	○	-	12)
24	미래에셋변액보험채권증권투자신탁(채권)	-	-	-	-	-	-	-	-	12)
25	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-	-	○	○	12)
26	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○	-	○	○	12)
27	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-	-	○	○	9), 12)
28	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-	-	○	○	9), 10), 12)
29	미래에셋차이나과창업증권투자신탁(주식)	-	-	-	-	-	-	○	-	12)
30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(H)(주식)	-	-	-	-	-	-	○	○	9), 10), 12)
31	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자투자신탁2호(UH)(주식)	-	-	-	-	-	-	○	○	9), 12)
32	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4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○	○	9), 12)
33	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-	-	-	-	-	-	○	○	12)
34	미래에셋퇴직플랜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○	○	9), 12)
35	미래에셋퇴직플랜G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○	○	12)
36	미래에셋퇴직플랜KRX100인덱스안정형2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-	-	-	-	○	○	12)
37	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-	-	-	-	-	-	-	○	10), 12)
38	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-	-	-	-	○	-	○	○	9), 12)

2. 변경 사항:

1) 클래스 신설

2) 운용역 변경

3) 투자대상자산 추가

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5) 환매수수료 삭제

6) 세제 혜택 연장 관련 변경

7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
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9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10) 법 개정사항 반영

11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12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12월 16일 (금)

4. 변경 내용:

1) 클래스 신설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>	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[아래참조1]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)	<신설>	[아래 참조 1]
제37조(보수)	<신설>	[아래 참조 1]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환매수수료	<신설>	[아래 참조 1]
제1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제2부.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	
제2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신설>	[2022.12.16] [아래 참조 1]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[종류형 구조]		
11. 매입, 환매 및 기준 가격 적용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<신설>	[아래 참조 1]

[참조 1] 가입자격

구분	가입자격
----	------

종류 F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- 판매회사의 일임·자문 계좌(랩어카운트, Wrap Account)를 통해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- 법 시행령 제 103 조에 따른 금전신탁
-------------	---

펀드명	신설 클래스	판매보수(%)	선취 판매 수수료	환매 수수료
미래에셋미국블루칩인덱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종류 F	-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2) 운용역 변경

-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운용전문인력>	<u>정원택</u>	<u>정원택(책임), 송재원(부책임)</u>

3) 투자대상자산 추가

[집합투자규약]

-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

- 미래에셋솔로몬중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

- 미래에셋엠브렐러증권투자신탁(채권)

-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3. <신설></p>	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2. <생략></p> <p>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

[정관]
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
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(채권혼합)

-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
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51 조(투자대상 등)	<p>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3. <생략></p> <p><u>4. <신설></u></p>	<p>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.</p> <p>1. ~3. <생략></p> <p><u>4. 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)</u></p>

[투자설명서]

-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슬로몬증장기국공채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
- 미래에셋엠브렐러증권투자신탁(채권)
- 미래에셋연금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(1) 투자대상	<p>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</p>	<p>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<생략> <u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u></p>
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회사(주식)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한아름증권자투자회사(채권혼합)
- 미래에셋드림타겟증권투자회사(주식)
-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회사(주식)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. 8. 가. (1) 투자대상	<p>[단기대출/금융기관 예치/양도성정기예금 정서, <신설> <생략> <신설></p>	<p>[단기대출/금융기관 예치/양도성정기예금증서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<생략> <u>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</u></p>

4)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추가

미래에셋코리아장기증권모투자신탁(채권)		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제2부 별첨1]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. 나. (1) 투자대상	[단기대출 주 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 2), <신설> <생략> <신설>	[단기대출 주1), 금융기관에의 예치 주2), <u>환매조건부매수</u> <생략> ※주)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.

5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4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2. 종류A-e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3. 종류AG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4. 종류A-w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<u>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A, A-e, AG, A-w] 3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 일 이상 90 일 미만: 이익금의 30%	환매수수료 없음

-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A 수익증권 30일미만:이익금의 70% 30일이상 90일미만:이익금의 30%</p> <p>2. 종류A-e 수익증권 30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일 이상 90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p> <p>3. 종류AG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70%</p> <p>4. 종류C1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70%</p> <p>5. 종류C2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70%</p> <p>6. 종류C3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70%</p> <p>7. 종류C4 수익증권 90일미만:이익금의70%</p> <p>8. 종류C-e 수익증권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u>90일미만:이익금의70%</u> <u>9. 종류C-I 수익증권</u> <u>90일미만:이익금의70%</u>	
--	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<u>[A] 30 일미만:이익금의 70% 30 일이상</u> <u>90 일미만:이익금의 30%</u> <u>[A-e] 3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 30 일</u> <u>이상 90 일 미만: 이익금의 30%</u> <u>[AG, C1, C2, C3, C4, C-e, C-I]</u> <u>90 일미만:이익금의 70%</u>	<u>환매수수료 없음</u>

- 미래에셋엠브렐러증권투자신탁(채권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<u>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</p> <p>② <u>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</p> <p><u>1. 종류A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 <p><u>2. 종류C-A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3. 종류C-I 수익증권</u> <u>90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</p> <p><u>4. 종류A-I 수익증권</u> <u>해당사항없음</u></p> <p>③ <u>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</u></p>	<p>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</p>

	<u>도 불구하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u>	
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 환매수수료 >	<u>[A, A-I] 없음</u> <u>[C-A, C-I] 90 일 미만: 이익금의 70%</u>	<u>환매수수료 없음</u>

- 미래에셋헤지펀드 셀렉션 혼합자산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1조(환매수수료)	<u>①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u> <u>②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u> <u>1. 1년 미만 환매 시: 환매금액의 1.00%</u> <u>2. 1년 경과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 이전 환매시: 해당사항 없음</u> <u>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저축약관”에 정한바에 따라 목적식 저축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u>	<u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 환매수수료 >	<u>[A, A-e, AG, C, C-a, C-I, C-P, C-Pe, C-e, CG, F, S]</u> <u>- 1년 미만 환매 시: 환매금액의 1.0%</u>	<u>환매수수료 없음</u>

	- 1년 경과 후 환매 시: 없음	
--	--------------------	--

6) 세제 혜택 연장 관련 변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4. 나. 과세 (4)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 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-가입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	-가입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

8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 G2 이노베이터증권투자신탁(주식)	<u>2</u>	<u>1</u>	<u>23.62</u>	<u>25.32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4	4	<u>7.39</u>	<u>8.06</u>
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혼합)	3	3	<u>13.14</u>	<u>13.7</u>
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<u>4</u>	<u>3</u>	<u>9.47</u>	<u>10.07</u>
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 40 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-재간접형)	4	4	<u>7.55</u>	<u>8.08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1</u>	<u>2</u>	<u>26.3</u>	<u>24.69</u>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<u>21.65</u>	<u>21.03</u>
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4 호(주식)	2	2	<u>23.78</u>	<u>23.61</u>
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(일반상품-파생형)	<u>3</u>	<u>2</u>	<u>14.1</u>	<u>16.09</u>
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 3 호(주식)	2	2	<u>23.5</u>	<u>22.27</u>
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1</u>	<u>2</u>	<u>26.2</u>	<u>24.79</u>
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3</u>	<u>2</u>	<u>14.15</u>	<u>15.02</u>
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<u>22.66</u>	<u>22.79</u>
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2	2	<u>21.59</u>	<u>22.2</u>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2 호(H)(주식)	2	2	<u>21.89</u>	<u>18.91</u>
미래에셋차이나본토증권투자신탁 2 호(UH)(주식)	2	2	<u>20.27</u>	<u>18.06</u>
미래에셋퇴직연금가치주포커스 4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<u>3</u>	<u>4</u>	<u>10.28</u>	<u>9.61</u>
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증권투자신탁 1 호(주식)	<u>1</u>	<u>2</u>	<u>26.33</u>	<u>24.74</u>
미래에셋퇴직플랜 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<u>5</u>	<u>4</u>	<u>4.5</u>	<u>5.19</u>
미래에셋퇴직플랜 G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<u>5</u>	<u>4</u>	<u>4.13</u>	<u>5.05</u>
미래에셋퇴직플랜 KRX100 인덱스안정형 20 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혼합)	<u>5</u>	<u>4</u>	<u>4.62</u>	<u>5.3</u>
미래에셋퇴직플랜증권투자신탁 1 호(채권)	<u>5</u>	<u>4</u>	<u>3.67</u>	<u>5.59</u>
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트혼합자산투자신탁(사모투자재간접형)	5	5	<u>2.85</u>	<u>2.93</u>

9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<p>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<u>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.</u>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</p>	<p>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(<u>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)</p> <p>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<u>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</u>)</p> <p>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(<u>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</u>)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<u>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)</p>
--	--	---

10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</u>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제15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 <p>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생략></p>	<p><삭제></p>
제17조(운용 및 투자 제한)	<p>2. <생략>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</u> <생략></p>	<p>2. <생략> 나. <삭제></p>

<p>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</p>	<p>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<신설>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②~③ <생략></p> <p>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8. 가. 투자대상	<p>-채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</p> <p>-자산유동화증권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생략></p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중략>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</u>, <생략></p>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나. <삭제></p>

11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계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----	------	------
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사항 없음

12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. 1. 가. 회사의 개요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- 일반사무관리회사 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 - 신탁업자 : 국민은행	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<삭제>
제4부.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	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

*상기 변경사항에 대한 집합투자규약 및 정관 조항 번호는 펀드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, 변경 내용은 동일함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

[별첨] 담당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

1. 경력

1) 성명: 송재원 매니저

2) 주요경력

(15년~18년) KB증권 리서치센터

(18년~22년) KTB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

(22년~현재) 미래에셋자산운용

2. 운용현황(2022.11.30.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)

해당사항 없음

3. 운용성과(2022.11.30. 현재, 설정액 기준 상위 10개 공모 펀드 나열, 기간별 수익률, %)

해당사항 없음